

청주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336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임상순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1. 3. 12.

판결 선고2021. 4. 23.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3.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0. 4. 1. 접수 제86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8. 11. 26.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상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를 D,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25,000,000원, 보험기간을 2018. 11. 26.부터 2019. 11. 25.까지로 하여 만일 D가 소외 회사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다. D는 소외 회사에 2019. 2. 9.경부터 소외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물품대금을 연체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9. 6. 27.경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3. 소외 회사에게 24,075,23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D는 2020. 3. 26.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4.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후 D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각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 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6. 29. F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유류대금 43,500,000원을 대신 송금하는 방식으로 D의 아버지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C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시장 적정가격인 3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개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F이 2012. 6. 29. 소외 회사로 43,500,000원을 송금한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송금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까지는 7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지영

별지